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시·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(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